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기본내용



투자자, VC, PEF 등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할 때 상환전환우선주 (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인수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상환우선주” + “전환주식” 2가지 내용이 결합된 주식입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일반인 경영자도 투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설정한 상황조건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환조건은 통상 상당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전환청구를 받고 큰 곤경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몇 가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전환주식(convertible)은 주주의 청구에 의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또는 그 반대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주식이 대부분입니다.

상환우선주는 일정한 시기와 가격 조건으로 상환하는 주식으로, 발행회사에서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경우(callable)로 이익잉여금을 소각할 수 있는 주식과, 투자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redeemable)이 있습니다.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S상 분류	의결권	전환권/상환권
전환우선주	자본	부여가능	주주
상환우선주(callable)	자본	부여가능	발행회사
상환우선주(redeemable)	자본	부여가능	주주
보통주	자본	있음	-
전환사채	부채	없음	사채권자

〈표 2〉 정관 및 계약상 필수조항

구 분	정 관	계 약 서
의결권	의결권 부여	의결권 기술
상환권	상환권 부여	상환조건 기술 (시기, 이자, 중도상환, 분할상환 등)
전환권	전환권 부여	전환조건 기술 (시기, 실적, 공모기DC, 하회발행 등)
배당관련	배당관련 내용기재 (최소 배당율, 누적여부 등)	배당관련 내용기재(약정배당율, 누적여부 등)
청산 및 M&A시 배분	청산시 배분우선권 부여	청산시 배분의 내용 및 M&A시 배분의 내용 기재
보통주 유상증자시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있는 경우)	우선주에 신주증자분의 할애 여부를 기재 할애시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결정	우선주에도 신주증자분 할애 조건 할애시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보통주 일 수도 있음) 또는 우선주(선호함)로 함
무상증자시 (보통주와 우선주가 함께 있는 경우)	우선주에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결정	통상 우선주 무상 받음 무상증자규모에 대해 통제해야 함

〈표 3〉 우선주 인수계약서 구성내용

구 분	내 용
필수적 기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을 인수할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우선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보통주 전환, 주식상환, 의결권 등 3. 상환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소각, 우선주 상환청구권(redeemable)과 회사의 상환권(callable) 대립 4. 신주인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상증자시 동종 우선주, 유상증자시 회사가 발행할 주식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이 있음을 명시
선택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결권 : 보통 1주식 1의결권을 계약서에 명시 2. 배당 : 참가적·누적적 배당 내용 명시 3.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간, 전환비율, 전환청구전 취득가액을 하회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추가 발행시 자동 가격조정 - 회사 실적에 따른 전환비율 탄력적 적용 4. 전환조건 조정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가격의 조정 및 재조정시 조정증서를 주주에게 발급 5. 청산시 우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인은 회사가 청산하고자 하는 중요자산을 우선 매수할 권리 - 인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보유주식 매수청구 6. 배당금 지급 : 배당시기와 배당금 연체시 연체이자율 적용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산시 주식매입 : 투자자 매수청구시 이해관계인 매수의무(매수가격 명시) 2. 상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권(callable) 명시 - 적용사유 : 계획사업의 확산 미흡, 인수자 과잉경쟁, 대주주지분율 감소, 경영권 방어 어려움 3. 전환청구와 상환의 우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의도를 가지고 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 창투사의 전환청구 우선내용 명시 4. 회사의 약정사항 5.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인력의 부재로 인한 회사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 - 우리나라에는 아직 보험 제도가 없음 6. 이해관계인의 진술, 보증 7. 이해관계인의 약정사항 8. 퇴사금지 9. 윤리경영 10. 비밀유지

기업법무, 기술법무, 벤처기업,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